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 32 호 2015. 3.24(화)

공 고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1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공고 제2015-421호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3월 2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등에 대하여 규제개선토록 권고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안 제7조제2항

-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나.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안 제8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의 이의신청기간은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04월 1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040 남원시 요천로 1285(조산동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31-5931)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063-620-79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5. 3.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보건지원과장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하여 규제 개선토록 권고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안 제7조제2항)

나.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의 이의 제기 기간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안 제8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15. 3. 24. ~ 2015. 4. 13.(20일간)
- 결과 :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을 “「지역보건법」 제26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를 위반하여”를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로 한다.

제5조 중 “부과하고자 할”을 “부과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부과하고자 하는”을 “부과할”로, “미리 당사자등”을 “당사자 등”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을 “구술”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11조 중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4조 관련)

I.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II.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 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 또는 지역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 또는 지역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지 제1호서식]

위 반 행 위 조 사 서 (제5조 관련)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 화	
위반사항	적발일시			
	위반법규			
	위반내용			
	기 타	※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조사자 의견				
관련자료 근거		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p>「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조사자 직 성명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직 성명 (인)</p> <p>남원시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제7조제1항 관련)

문서번호 :

수신처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귀하는 아래와 같이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 및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반행위	일시		업종	
	내용			
위반장소				
처분내용	과태료 :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제7조제2항 관련)

문서번호 :

수신처 :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납부 의무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 (시설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제7조제3항 관련)

문서번호 :

수신처 :

제 목 :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납부 고지서번호				
취소(변경) 내역	당초 납부액	취소(변경)금액	차액	비고
취소(변경)사유				

붙임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납 부 기 간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 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p> <p>남원시장 귀하</p>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8조제2항 관련)

문서번호 :

수 신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장 발 신 : 남원시장 (인)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 제26조제4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기관		이의제기일자	
이 의 제 기 사 유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 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u>」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역보건법</u>」 제26조----- ----- ----- ----- -----.</p>
<p>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 ----- ----- -----.</p>
<p>1. 「<u>지역보건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p>	<p>1. ----- ----- ----- <u>거짓으로</u> ----- -----</p>
<p>2. <u>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u></p>	<p>2. <u>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u> --</p>
<p>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 <u>부과할</u>----- ----- -----.</p>
<p>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① 제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행정절차법</u>」 제21조에 따라 <u>미리 당사자들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u></p>	<p>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① ----- <u>부과할</u>----- ----- ----- <u>당사자 등</u>-----</p>

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생략)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생략)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남원시의 수입으로 한다.

구술-----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30
일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

----- 60일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과태료의 귀속) -----
----- 세
외수입-----.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
------------	---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